

定 款

1989. 7. 7 제정

1991. 3. 28 개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協會는 社團法人 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以下 “本協會”라함)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協會는 各種 建設工事의 安全診斷을 通하여 貴重한 人命과 經濟損失을 豫防하고, 建設安全 技術者의 資質向上 및 權益擁護를 通한 安全의 先進化를 早期에 達成토록 하여 勤勞者의 福祉向上과 國家 建設産業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本部 및 支部) 本協會는 서울特別市에 本部을 두고, 必要에 따라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4 條 (事業) 本協會는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會員管理 業務 및 技術指導 事業
2. 建設安全管理 技術分野에 關한 業務分析 技術檢討, 現場指導 및 綜合研究 開發事業
3. 建設安全管理에 關한 技術研究 및 直·間接 調査事業
4. 建設現場 重大災害 調査 및 要因分析 業務

5. 政府, 地方自治 團體와 公共團體 및 建設에 關聯된 各社 또는 個人이 依賴하는 建設安全管理, 技術諮問과 技術用役 業務

6. 産業安全保健法에 依한 審査, 診斷, 評價 改善計劃에 關한 業務 및 安全管理 諸般業務

7. 建設安全管理에 關한 教育訓練事業, 弘報事業, 專門技術圖書 編纂事業 및 學術發表會 開催

8.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등 公共關係에서 委託하는 事業과 建設安全에 關한 基礎資料 提供

9. 建設安全管理 技術에 關한 國內外 세미나 參席 및 情報交流

10. 建設安全技術者의 社會的 地位向上을 爲한 福利增進事業

11. 其他 國家社會 및 共益에 이바지하는 業務 및 建設安全管理技術에 必要한 諸般業務

第 5 條 (公告方法) ① 本協會의 公告는 本協會의 揭示板(또는 支部 揭示板을 包含)에 이를 揭示함과 同時에 本部의 所在地에서 發刊하는 1個 以上の 日刊新聞과 本協會에서 發行하는 技術情報誌에 掲載한

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內容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한다.

第 6 條 (通知 및 催告方法) 本協會의 會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會員 名簿에 記載된 會員의 住所로 한다. 但, 會員이 따로 本協會에 連絡處를 通知하였을 境遇에는 이 에 依한다.

第 2 章 會 員

第 7 條 (會員의 構成) 本協會는 會員은 正會員, 名譽會員, 準會員 및 顧問으로 構成한다.

第 8 條 (會員資格) ① 正會員은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建設安全管理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로 한다.

② 名譽會員 및 顧問은 國家에 功勞가 至大하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人士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로 한다.

③ 準會員은 教育法에 依한 學校에서 建設安全技術에 관련된 學科를 專攻하고 卒業한 者 및 本協會에서 實施하는 建設安全管理者 養成教育을 修了한 者와 安全管理分野에서 從事한 經驗이 있는 者로서 本協會에 加入한 者로 한다.

④ 第1項·第2項·第3項의 會員은 本協會에 加入한 者로 한다.

第 9 條 (會員의 義務) 本協會의 會員은 本協會가 定하는 會費를 負擔하고 本協會의 定款 및 諸 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10條 (會員의 權利) ① 會員은 平等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② 會員은 本協會 定款 第4條에 定한 事業에 參與權을 가진다.

③ 會員은 本協會의 研究 및 技術開發 등의

資料 活用權을 가진다.

第11條 (會員加入) 本協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자는 加入申請書를 다음 書類와 함께 本協會에 提出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技術資格證 寫本(原本對照)
2. 住民登錄證 寫本
3. 現勤務處 在職證明書 또는 諸證明書
4. 其他 必要로 하는 書類

第12條 (會員의 申告義務) 會員이 提出한 加入 申請書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本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 (脫退) ① 會員이 本協會에 脫退하고자 할 境遇에는 脫退願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된 때에는 當然 脫退된다.

1. 會員의 國家技術資格 喪失
2. 除 名
3. 會員의 死亡

③ 會員이 海外移民을 하였을 때에는 會員의 資格을 留保한다.

第14條 (除名의 事由)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

但, 本協會는 總會 開催 10日前에 그 會員에 對하여 除名의 事由를 通知하고 理事會에서 解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1. 法令에 依據한 監督官廳의 處分 또는 本協會 定款과 諸規定에 違反하거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本協會의 名譽를 失墜하게 한 會員
2. 本協會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會員
3. 本協會의 目的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會員

4.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한 會員
5. 本協會에 財産上의 損害를 끼치는 行爲를 한 會員
6. 3年 理想의 長期間에 걸쳐서 本協會에 會費를 納入하지 않은 會員

第15條 (脫退會員의 再 加入) 第13條 規定에 依하여 除名된 會員은 除名日로부터 3年이 經過한 後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本協會의 會員으로 再加入할 수 있다.

第16條 (脫退 會員의 請求權)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脫退 또는 除名된 會員은 既納入한 加入費, 會費等에 對하여 返還 請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第3章 總 會

第17條 (總會) ① 本協會의 總會는 會員으로 構成하되 代議員會로 가름할 수 있다.

② 總會는 會長이 召集하여, 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③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이를 區分한다.

第18條 (定期總會) 定期總會는 每年 2月中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9條 (臨時總會) ① 臨時總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2. 代議員 30人 以上이 書面으로 會長에게 召集을 要求한 때
3. 正會員 300人 以上이 書面으로 會長에게 召集을 要求한 때
4. 第44條 第4項에 依하여 監查가 要求한 때

② 第2號, 第3號, 第4號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은 2週日 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20條 (監查의 總會 및 理事會 召集) ① 監查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5日 이내에 臨時總會 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1. 前條 第2項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會長이 正當한 理由없이 2週日 이내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

2. 第30條 第2號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會長이 正當한 理由없이 1週日 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

② 前項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에는 監查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할 수 있다.

第21條 (總會 召集 通知) 總會召集 通知는 總會日로부터 7日前에 그 會議의 目的 事項을 記載한 通知書를 發送하거나, 國內日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22條 (總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任員의 選出과 解任
3.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策定과 그 變更
4. 決算承認
5. 事業 所要資金의 起債
6. 事業計劃 및 經費豫算으로 定한것 外에 새로이 義務를 지며 權利를 桑實하는 行爲
7. 不動產의 取得, 變更, 讓渡 其他의 處分 또는 이에 關한 權利의 設定
8. 其他 重要한 事項

第23條 (議決定足會) ① 總會의 議決은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한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以上으로 議決한다.

② 第22條의 變更事項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3分の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은 在籍代議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4條 (議決權의 制限) 本協會와 會員間에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會員은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25條 (總會의 議事錄) ① 總會의 議事に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出席任員이 이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26條 (代議員의 定數 및 選出과 任期) ① 本協會 代議員의 選出에 關한 事項은 定會員중에서 會長團 및 會員의 推選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構成한다.

② 代議員中 缺損이 生기때에는 前項의 方法으로 缺損數를 補選한다.

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補選으로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단, 初代代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④ 代議員의 缺損數가 總代議員數의 4分之 1以上에 達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缺損된 代議員의 補選은 다음 定期總會에서 이를 行할 수 있다.

⑤ 本協會의 任員은 前 1項의 規程에 不拘하고 當연직 代議員이 된다.

第27條 (代理人의 資格) ① 代議員의 代理人은 本協會의 正議員이어야 한다.

第 4 章 理事會

第28條 (理事會) ① 本協會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本協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會長團을 包含한 理事 全員으로 構成한다.

③ 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29條 (理事會의 參與制限) 本協會의 任員中 本人 또는 本人과 間接的인 理解關係가 있는 議案을 議決할 때에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第30條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本協會의 基本方針·代議員 選任 및 會員加入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4. 組織, 機構 및 定員에 關한 事項

重要한 規程의 制定 또는 改定에 關한 事項

6. 事業 所要資金의 起債 및 償還에 關한 事項

7. 重要한 財産의 取得, 處分 및 賃貸借에 關한 事項

8. 重要한 代行事業의 受託, 委託 및 再委託 施行에 關한 事項

9. 利益 剩餘金 處分에 關한 事項

10. 重要한 訴訟 및 和解에 關한 事項

11. 本協會의 運營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執行

12. 加入費, 會費, 經費 賦果에 關한 事項

13.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14. 其他 業務運營에 必要하다고 會長이 認定하는 諸般事項

第31條 (理事會 議長과 召集)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理事會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2. 在籍理事 3分之 1以上の 要求가 있는 때

3. 第44條 第 4項에 依하여 監査의 要求가 있는 때

第32條 (議決方法)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③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第33條 (書面決議) 會長은 理事會 議決事項 中에서 輕微한 事項에 대하여는 文書로써 理事會의 同義를 얻어 執行할 수 있다.

第34條 (議事錄 作成)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가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5章 支 部

第35條 (支部設置) 地域別로 正會員數가 50人 이상일 때 本協會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따라 支部를 設置하여 運營할 수 있다.

1. 서울特別市 및 首都圈 地域은 別度의 支部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本部에서 管轄한다.

2. 地方은 各直轄市廳 및 各道廳所在地에 支部를 둔다.

第36條 (支部名稱) 各 支部의 名稱은 社團法人 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直轄市道) 支部라 한다.

第37條 (支部의 機能 및 活動) 支部의 機能 및 活動은 다음 各號의 事項으로 한다.

1. 第4條의 事業 및 活動에 關聯이 있는 事項中 理事會에서 委任 또는 承認 받은 事項

2. 總會에서 特히 指定한 事項

第38條 (支部組織 및 規程) 支部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規程의 制定 및 變更은 該當支部에서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運營한다.

第6章 委員會

第39條 (委員會의 設置) 第29條 規定에 依한 理事會의 議決事項에 關한 諮問과 第4條 規定에 依한 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各各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40條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은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7章 任 員

第41條 (任員의 定數) ① 本協會에 다음 各號와 같이 任員과 顧問을 둔다.

1. 會長 1人(常動)

2. 副會長 3人(常動 1人, 非常動 2人)

3. 理事 15人(常動若干名)

4. 監查 2人(非常動)

5. 顧問若干名

第42條 (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한다.

② 會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總會 또는 理事會가 附議 및 建議한 事項을 處理하여야 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또는 副會長이 有故時나 闕位된 때에는 미리 會長이 指定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常任理事는 會長과 副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指定하는 바에 따라 本協會의 業務를 管掌한다.

第44條 (代理人의 選任) 會長은 本協會의 業務에 關한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때에는 副會長, 理事 또는 事務局 職員中에서 그의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第44條 (監查의 職務) ① 監查는 本協會의 經理와 財産 및 業務執行 狀況을 每會

計年度 1會 이상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書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은 建議書를 添附할 수 있다.

③ 監事는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別途의 人員이 必要할 時 會長에게 要求하고 會長은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④ 監事が 財産의 狀況 또는 業務의 執行에 關하여 不正事實을 發見한 경우에 이를 總會 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勞動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5條 (任員의 選出 및 任期) ① 會長, 副會長 監事 및 理事는 正會員中 總會에서 選出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단,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直前任期 會長은 當然히 顧問으로 推戴되고, 直前任期 副會長은 當然히 理事로 推戴된다.

③ 理事는 會長團의 推薦을 받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任命되며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④ 任員中 缺損이 發生한 때에는 第1項, 第2項을 準用하여 補選하며,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46條 (任員의 資格制限)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本協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및 破產者

3. 禁錮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고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4. 法令에 依하여 懲戒免職의 處分の 받은 때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他 機關에서 懲戒, 免職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6. 法令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7. 本協會의 正會員이 아닌 者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된 任員이 退職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8章 加入費, 會費, 贊助金 및 寄附金

第47條 (加入費) 第10條 規定에 依하여 本協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會員은 別途規程에서 定하는 一定額의 加入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48條 (會費, 贊助 및 寄附金) ① 本協會의 會員은 別途規程에서 定하는 年會費 또는 終身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② 會費 納入方法, 時期 등에 대하여는 別途規程으로 定한다.

③ 本協會와 關聯된 團體 및 個人으로부터 寄附 또는 贊助된 金額의 使用에 대하여는 別途規程으로 定한다.

第9章 會 計

第49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 年度에 準한다.

第50條 (特別會計와 設置) ① 本協會에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② 特別會計를 두고자 할 때에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0章 補 則

第51條 (書類備置義務) ① 本協會 事務局에 다음 各號의 書類 및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1. 定款
2. 任員 및 職員의 名簿와 履歷書
3. 總會會議錄 및 理事會會議錄
4. 財産臺帳 및 負債臺帳
5. 補助金管理臺帳
6. 收入, 支出에 關한 帳簿 및 證憑書類
7. 主務官廳 및 關係機關과의 往復書類
- ② 決算報告書는 定期總會 1週日 前까지 事務局에 備置하여야 한다.
- ③ 會員과 本協會의 債權者는 本條 第2項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

第52條 (專擔部署의 設置) ① 本協會의 會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局 및 其他 必要한 部·室을 둘 수 있으며 局·部·室에 각각 局長·部長·室長을 둘 수 있다.
 ② 事務局長은 正會員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③ 專擔部署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別度 規程으로 定한다.

第53條 (任員과 職員의 兼職制限) ① 本協會의 任員은 事務局의 幹部職員을 兼할 수 없다.
 ② 常動任員과 職員은 營利的 事業에 從事할 수 없다. 단, 理事會가 承認을 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第54條 (常動任員 및 職員의 任命) ① 本協會의 會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局 및 기타 必要한 部·室을 둘 수 있으며 局·部·室에 각각 局長·部長·室長을 둘 수 있다.
 ② 前項의 幹部職員이라 함은 局長, 室長, 部長을 말한다.

第55條 (給與) 本協會 常動 任職員의 退職 手當에 關한 事項은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② 本協會는 別途 規程에 定하는 바에 따라 退職給與 積立金을 積立할 수 있다.

第57條 (實費補償과 報酬) ① 本協會 代議員

및 委員의 實費補償 및 報酬는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第58條 (事業計劃과 收支豫算) 會長은 每會計年度의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收支豫算을 編成하여 當該會計年度가 開始되기 前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次期總會에서 追認을 얻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59條 (非會員의 資料利用) 本協會는 會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第4條에서 規定한 事業의 結果로 얻어진 諸般資料를 非會員에게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第60條 (規程)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은 定款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 規程으로 이를 定한다.

1. 總會에 關한 事項
2. 事業의 執行과 會計에 關한 事項
3. 任員에 關한 事項
4. 會員에 關한 事項

② 本協會 定款 및 規程에 規定되지 않은 諸事項은 法令 및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11章 解散 및 清算

第61條 (殘餘金의 處理) 每會計年度의 剩餘金은 缺損을 補填하고 別途 規程에 依한 事業準備金을 控除하며 殘餘金 發生時에는 理事會 決議를 거쳐 處理한다.

第62條 (缺損補填) 本協會는 會計年度末에 缺損이 있을 境遇에는 別途로 定하는 事業 規程에 따라 이를 補填한다.

第63條 (解散) ① 本協會는 存續이 必要치 않을 때에는 總會 議決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解散한다.

② 議決定足數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재적대의원 3分の 2以上の 贊成

으로 議決한다.

第64條 (殘餘財産의 歸屬) 清算人은 本協會의 解散時 殘餘財産을 處分하여 勞動部 長官의 承認을 얻어 遲滯없이 政府 또는 公共團體에 寄贈하거나, 全會員에게 均等 配分하여야 한다.

附 則

1. 本協會 定款은 勞動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 登記한 날로부터 努力을 發生한다.
2. 本協會 定款中 職制, 人事, 報酬에 關한 規程은 勞動部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變更할 때도 또한 같다.

別表 1. 代議員의 定數

等級 區分	技術士	技師1級	技師2級	合 計
代議員	30名	15名	5名	50名

단, 下位等級의 該當者가 없을때에는 上位等級에서 代身할 수 있다.